「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신・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	고
제3조(지원대상 물품) ① (생 략)	제3조(지원대상 물품) ① (현행과 같음)	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4. 영 제248조의2제1항 및 「수출통관 사무처리	ㅇ 중고자동차,	, , ,
	에 관한 고시」제7조의3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	물 등 적재 만 보세구약	·
	하는 장소에 반입후 신고한 물품으로써 검사대	반입하여 신	,
	<u>상 수출물품</u>	록 관세청건	- '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	정한 물품° 검사비용 지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70/110/	11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정사항
2. 「국세징수법」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	2. 「국세징수법」제30조 및 「지방세징수법」제	반영	
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	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		
	<u>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</u>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
제4조(지원대상 검사장소) 영 제187조의4제1항제2	제4조(지원대상 검사장소) ① 영 제187조의4제1항	ㅇ제2항 신설	
호에 따른 "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소"	제2호에 따른 "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검사 장	라 조문의	
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	소"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	제1항으로	也亿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ㅇ적재지 공항	항만 보

<u><신 설></u>	4.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제7조의3	세구역 등에 반입
	에 따라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장소	후 신고하는 중고
<u> <신 설></u>		자동차, 폐기물 등
<u> </u>		을 검사하는 장소
	하다고 인정되어 세관장이 검사 가능한 별도의	와 검사가 곤란하
	장소로 이고하여 검사하거나 보세운송하여 겁	여 검사가능 장소로 로 이고 또는 보세
	사하는 장소	운송하여 검사하는
<u> </u>	 ② 제1항 각호의 검사장소가 법 제173조에 따른	장소를 지원대상에
	세관검사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비	추가
	<u>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	ㅇ물품의 특성상 검
		사 가능장소로 이
		고 또는 보세운송
		하는 경우 등 해당
		장소가 세관검사장
		으로 지정되지 않
		는 경우에도 지원
제6조(검사비용 지급액 등) ① (생 략)	 제 6조(검사비용 지급액 등) ① (현행과 같음)	대상에 추가
② 관세청장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 회계	2	ㅇ물가인상 등을
연도 상반기에 지원대상 검사비용을 <u>세관별로</u>	<u>세관별로 조사</u>	고려한 지급기준
조사하여야 하며, 조사된 자료 등을 고려하여	하여 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	현실화

검사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거나 다음 회계연	
도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.	
③ ~ ④ (생 략)	③ ~ ④ (현행과 같음)
<u>부칙</u>	부칙
<u><신 설></u>	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1년 0월 00일부터 시행
	<u>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2조(경과조치)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
	따라 시행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[별표] 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	[별표] 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 이용어정리
<u>(현행과 같음)</u>	<u>(붙임 1)과 같이 개정한다.</u>

(붙임 1)

[별표]

검사결과 검사비용 지원제외 대상 물품

	검사결과			
구 분	구분	번호	위반사항	개정이유
제3조제1항 제1호 물품 (관리대상화	1.검색기검사	1-(1)	타기관 이첩(원자력안전위원회 등)	
		2-(1)	안보위해물품, 금지품 위장수입 적발(조사의뢰)	†
	2. 즉시검사 (검색기검사 후 개장검사 포함)	2-(2)	품명위장 • 타물품혼입밀수(조사의뢰)	
		2-③	위험물품•검역물품 등 적발(조사의뢰)	1
		2-4	수량・중량 과부족(조사의뢰)	
물)		2-(5)	상표권등 지식재산권 위반 혐의물품(조사의뢰)]
=	上 日/	2-6	원산지 표시 위반(조사의뢰)	
	1. 품 목분류 위반	1-(1)	고세율 품목으로 세번변경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1. 점속군대 제안	1-(2)	내국세 해당품목으로 세번변경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2. 수량중량상이	2-(1)	수량·중량 과·부족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	2-(2)	무단반출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3. 세율(액)	3-(1)	동일세번내 고세율로 변경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적용 위반	3-2	동일세번내 내국세 부과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4. 관세감면·분		7101H-1/71-W-1/651 1/01-1/	- - 용어정리
	납 적용 위반	4-(1)	감면불허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5. 기격신고 위반	5-(1)	기격·운임·보험 등 누락과표 과세(자체조사 또는 조시의뢰)	
		6-(1)	수입금지품 위장수입	
	6 푸벅위산 ├──	6-(2)	미신고물품 위장수입	
		7-(1)	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변경(동일세번)	
	7. 세관장확인	7-(2)	세관장확인대상으로 변경(세번변경)	(통고처분 →자체조
	사항 위반	7-(3)	수입요건확인서류 허위구비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
		7-(4)	수입요건확인서류 미구비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사/조사의
제3조제1항		8-(1)	마약류 적발(조사의뢰)	되→조사
제2호 물품		8-2	총포류 등 시회안전 위해물품 적발(자체조사 또는 조사의뢰)	의뢰)
(부두직통관	 8. 국민건강사	8-3	총포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(통관보류 등 기타조치)	74)
, , , , -		0 🕡	국민건강·사회안전 집중관리 품목 적발(자체조사 또는	
화물)	회안전 적발	8-(4)	조사의뢰)	
		8-(5)	국민건강 시회인전 집중관리 품목 적발(통관보류 등 기타조치)	
		8-6	기타 국민건강·시회인전 등 침해물품 수입(통관보류)	
		9-(1)	원산지 미표시	
	9. 원산지표시	9-(2)	원산지 허위표시	
		9-3	원산지 오인표시	
	위반	9-(4)	원산지 표시 부적정	
		9-(5)	원산지 표시 손상	
		9-6	원산지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	
	10. 품질 등	10-①	허위표시 (통관보류)	
	허위·오인표시	10-2	오인표시 (통관보류)	
	11. 상표권 위반	11-①	위조상표 부착물품 수입(자체조사, 조사의뢰 또는 통관불허)	
		11-2	상표권 침해(진정상품)(통관불허)]
	12. 기타 지식재	12-①	상표권 이외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	

7 8	검사결과		게저이오	
구 분	구분	번호	위반사항	- 개정이유
신권 위반 13. 협업·분석 검사	신권 위반			
		13-①	불법제품(미인증,허위표시,미표시,기타위반표시)	
	13. 협업·분석	13-2	불량제품(부적합제품)	
	13-3	유해성분기준치 초과		
		13-4	인증결과 조사의뢰(자체조사 포함)	
	14. 방사능 검			
	사(표면 방사	14-(1)	방사능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(통관보류)	
	선량률 측정)			
	15. 수리 후 분석			
	및 품목분류 질의	15-①	수리후 분석의뢰 또는 품목분류 질의	
		16-(1)	파괴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(통관보류)	
	16. 정밀검사	16-(2)	비파괴 검사에 의한 유해물품 적발(통관보류)	
	1. 품목분류 상이	1-(1)	세번 상이(환급대상)	
	2. 수량중량 상이	2-(1)	수량・중량 과(부)족(조사의뢰)	
	3. 원자규정위반	3-(1)	원산지 허위 표시	
	3. 전간(TO TE	3-2	원산지 오인 표시 및 표시 부적정	
		4-(1)	위조 상표 수출(조사의뢰)	
	4. 자꾸째산권위반	4-(2)	상표권 침해	
제3조제1항		4-(3)	저작권·의장권 등 위반(조사의뢰)	
제3호 물품	5. 위장 수출	5-①	수출금지품 위장 수출	
(수출적재지		5-2	미신고물품 혼입 및 위장 수출	_
검사화물)	6. 현품검사 곤란	6-①	수출신고 수리전 적재로 현품검사 곤란	
	7. 전략 물 자	6-2	미제조로 현품검사 곤란	
및		7-(1)	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 미준수	
제4호 물품	수출통제 위반	0.0	카메니는 사이 사고	
(적재지 반	8. 중고차량	8-① 8-②	차대번호 상이 신고 기수출 차량 신고 오류	
입후 신고.	불법수출 위반	8-3	기구물 사당 선고 조ㅠ 도난·범죄 차량 적발	_
검사화물)	9. 수리 후 분석	9-1)	조선·컴피 사당 역할 정확한 품목분류 곤란 또는 성분분석을 요하는 물품	+
	10. 신고 오류	10-(1)	성숙진 남그분파 본단 또는 성분분기를 표어는 물람 신고물품 일부(전체) 누락 신고 오류	+
	11. 가마분정정 -	11-①	원상태 수출 부적정	+
		11-2	계약상이 수출 부적정	1
	12. 스마트폰	12-①	도난/분실 스마트폰 적발(5개 미만)	1
		12-②	도난/분실 스마트폰 적발(5~9개)	1
	불법수출 위반	12-3	도난/분실 스마트폰 적발(10개 이상)	

※ [별표] 제3조제1항제1호 물품의 검사결과 "1-①", 제3조제1항제2호 물품의 검사결과 "8-③", "8-⑤", "15-①"및 제3조제1항제3호 물품의 검사결과 "9-①"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비용 지급을 보류한 후 최종 검사결과가 [별표]의 검사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(당초 검사결과 포함) 검사비용을 지급한다.